

「통합이지바로 연구비 수행 전용계좌」핵심설명서



< 기본정보 >

가입대상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과제 참여 기관, 기업 및 개인사업자	
적용이율 (2024.12.26. 세금납부 전)	▷ 연 0.1%	
이자계산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계산	
이자결산	▷ 결산시기는 연 4회 3, 6, 9,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그 다음날(원가일) 원금에 더함.(※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실시)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 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금액	▷ 제한 없음
지급금액	▷ 제한 없음
거래제한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과제 참여 기관, 기업 및 개인사업자 외 가입 불가 (※ 증빙서류 제출 필수)▷ 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됨
계약해지	▷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점 방문 전 해당 지점에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통합이지바로 연구비 수행 전용계좌」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 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통합이지바로 연구비 수행 전용계좌」

■ 상품특징: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과제 참여 기관,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2 거래 조건

☞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 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 또는 비대면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과제 참여 기관, 기업 및 개인사업자 (※ 연구비 수행기업 선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금과목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기업자유예금과 동일)
가입금액	• 제한 없음
가입기간	• 제한 없음
거래방법	신규 : 영업점해지 : 영업점
적용이율	• 연 0.1% (2024. 12. 26. 세금납부 전 기준)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 결산은 연 4회 (3, 6, 9,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산출근거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12.26.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A) 우리은행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 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 산) 보호됩니다.	www.wooribank.com
세재혜택	•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등확인한 후 가능 	없는 계좌 - 없는 계좌
휴면예금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가능합니다. 	<mark>: "서민금</mark> 진흥원을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저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청취 포함) 등에 관한 정 및 있는 경우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수1)}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 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 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팅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2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 전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2조 4항 1호에 따라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통장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동되었을때는 변동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관영업전략부에서 관리중인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우리은행 인터넷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